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 27 선고 2019가합1074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일

담당변호사 신희명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지혜

변 론 종 결 2021. 12. 9.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4,745,0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기계설계업, 공구기계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반도체 장비,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면서 원고로부터 C ICE BAR 제조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제작, 설치 시운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경위

원고는 2018년 10월경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같은 해 12월 21일 피고에게 위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별지 1, 2 기재와 같은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위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8. 12. 21. 168,000,000원, 2019. 3. 25. 60,000,000원, 같은 달 29일 9,600,000원, 다음 달 23일 80,000,000원, 총 317,6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9년 2월경 피고에게 ‘원고의 공장에서 D의 검수를 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기계를 원고의 공장으로 옮겨서 제작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해 3월경 제작 중이던 이 사건 기계를 원고의 공장으로 옮겨 제작하게 되었다.

3) 원고와 피고는 2019. 4. 19.경 이 사건 기계를 D의 양산공장으로 옮겨 설치와 시운전을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528,000,000원(부가세 포함) 중 317,6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210,400,000원이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경위로 총 325,145,087원의 손해를 입혔던바, 이를 위 미지급 공사대금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면,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남은 114,745,0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내역		
순번	항목	금액(원)
①	2D 도면, 3D 도면, 매뉴얼(3D) 비용	10,000,000
②	자재비용(충진기 3대, SUCTION, 파지컨베이어, 디프로스트 탱크 어셈블리)	52,491,221
③	안전난간 설치비용	4,750,000
④	배관업체 비용	7,500,000
⑤	시운전, 안정화 관련 비용(출장비용, 도비비용)	16,603,866
⑥	18열 ROUND STICK INSERTER, 18열 AUTO 평 STICK INSERTER 비용	205,000,000
⑦	지체상금	28,800,000
		315,145,087

3. 판단

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판단

1) 2D 도면, 3D 도면, 매뉴얼(3D) 비용(순번 ①)

가)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2D 도면, 3D 도면, 매뉴얼(3D)(이하 ‘이 사건 도면 등’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1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도면 등을 작성한 후 이를, 원고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별지 2 사양도 9), 10), 11)항 참조}은 인정된다.

하지만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도면제공의무 이행시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이 사건 기계의 설치, 시운전 및 생산 개시 시점을 중도금, 잔금의 지급시점으로 삼고 있는바, 이 사건 기계의 완성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도면 제공 등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의무로 보이는 점(즉 피고가 그에 관한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③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 23.까지 317, 6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점, ④ 원고의 임원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로부터 악세서리 18열 수정도면, 제관 및 조립도가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인 녹취록 29쪽, 이하 ‘녹취록’이라 한다), 원고가 D에게 제공한 2D도면 제작도, 조립도, LAY OUT, 부품 LIST, 3D 도면, 배관도, 회로도에 관하여 피고가 기여한 부분도 있다고 보이는 점(녹취록 66쪽 이하 참고), 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주장,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 견적서(갑 제3호증)는 원, 피고간의 계약 체결과정에서 작성되는 참고용 문서이고 위 견적서대로 계약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1), 위 견적서에 설계비로 1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손해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도면 등의 제작,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악세서리의 자재비용(순번 ②)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기계 중 악세서리인 충진기 3대, SUCTION 1대, 파지컨베이어, 디프로스트탱크 어셈블리(이하 ‘이 사건 악세서리’라 한다)를 제작, 납품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원고가 이 사건 악세서리의 자재비용으로 52,491,221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나)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1, 10 내지 12호증, 을 제10 내지 22,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악세사리의 제작에 관한 자재비용으로 총 30,179,052원(28,679,052원 + 1,500,000원)을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위 인정범위를 넘은 자재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30,179,052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악세사리를 제작할 의무를 부담한다(별지 2 사양도 7), 8)항, 을 제14, 18호증 참조).

② 그러나 이 사건 악세사리는 원고의 공장에서 제작되었고, 아래와 같은 F(피고의 임원), E(원고의 임원) 사이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8. 4. 19. 기준으로 이 사건 악세사리의 자재비용과 배관비용으로 33,679,000원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녹취록(을 제25호증) 중 일부

[전략]

E : 사장님, 닥트 얼마에 하기로 했어요?

F : 견적 아직 안 나왔습니다.

E : 아직 안나오고 그냥 하라고 그런 거야?

F : 우선은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것을 빨리 끝내려고.

E : 그래도 받아야지. 씨. 며칠 지나고 달라고라도, 나중에 비싸게 부르면 어떡해? 한만큼 더 달라 그러면. 부르는 게 값이 돼놓으니. 33,679,000원이에요. 지금까지가.

F : 하아. 끝에다가. 예.

E : 여기까지 한거.

F : 여기까지가 합계가.

[일부 생략]

F : 52. 33,679,000원

E : 여기에 이제 저기 아울렛디프러스 저거. 컨베어 그런 거는 안 들어간 거야. 그 배

관도 *** 여기 넣어준 거고.

F :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③ F는 E가 작성한 수입단가 및 금액내역표(갑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정리표’라 한다) 중 순번 170까지의 내역을 확인하였고, 위 정리표(마지막 줄)에 ‘33,679,052원’을 직접 작성하였다. 위 정리표의 순번 170번까지의 기재에서 확인되는 배관에 관한 비용은 5,000,000원(순번 168)이고, 이 사건 약세사리의 자재비용은 28, 679,052원(33,679,052원 - 5,000,000원)이다.

④ 이 사건 정리표는 위 순번 170번까지의 항목 이외에도 순번 278번까지의 항목, 총 금액 52,491,221원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52,491,221원의 자재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a) 순번 171번부터의 항목은 피고 측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증인 E가 2019. 4. 19. 이후에는 피고 측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함(녹취록 71쪽)], (b) 위 순번에는 안전난간에 관한 비용(순번 190 내지 192, 230, 240 내지 242, 244, 245)과 배관비용(순번 229, 260)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c) 위 정리표에 의하면 2019. 5. 16.에 발생한 비용(순번 244, 245, 270, 271, 272, 273)과 2019. 5. 27.에 발생한 비용(순번 261 내지 268)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일자의 출장복명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d) 순번 169번과 순번 172번이 ‘(2019.) 4. 19. 출장빠우 700,000원’으로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고, 작성자인 E도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날짜가 똑같은 거면 중복됐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는 점(녹취록 33쪽)에 비추어 보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다만, F와 E 사이의 대화내용 및 이 사건 정리표의 순번 170번까지의 항목에 의하더라도, 33,679,000원의 자재비용에는 콘베이어(파지콘베이어)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는 원고가 파지콘베이어에 관한 부품비, 제작비용으로 1,500,000원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안전난관 설치비용(순번 ③)

가) 원고는, 원고가 피고가 제작한 WALK WAY 중 안전난간3) 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위반하여

원고가 안전기준에 맞는 안전난간을 직접 제작, 설치하였고 그 비용이 총 4,75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합당한 이유 없이 안전난간을 다시 제작한 것으로 위 비용 중 2,300,000원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처음 제작한 안전난간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 정황이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가 자인하는 2,300,000원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배관비용(순번 ④)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배관업체에게 7,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시운전, 안정화 관련 비용(순번 ⑤)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D에 옮겨 이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출장비용 13,403,866원, 설치에 관한 도비비용으로 3,200,000원, 합계 16,603,866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서 설치에 관한 도비비용으로 3,2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계약 제4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제작 뿐 아니라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 시운전을 제공할 의무까지 부담하고 있는 점, ② 출장비용의 근거가 되는 출장복명서(갑 제5호증)는 원고 회사 내부의 문서로 피고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기는 하나, 출장간 사람들의 이름, 직급, 지출내역의 날짜 및 금액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그 출장에 피고의 직원들도 참여하는 등 그 내용 자체는 믿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③ 위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경위가 어찌되었건) 원고와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기계를 옮기는 과정에 참여하였다는 것도 사실로 보이는 점, ④ 원래 피고 측이 하여야 할 일에 원고 직원들까지 함께 출장을 가게 된 것은 주로 원고측 사정, 즉 원고가 원청인 D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는 사실을 감추는 바람에 발생한 일로 보이는 점, ⑤ 위 비용의 대부분은 음료대, 식사비용, 숙박비용으로 출장에 있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위 출장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출장비용 중 50%에 해당하는 6,701,933원(13,403,866원 × 50%)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비비용 3,200,000원과 위 출장비용에 관한 손해 6,701,9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일 어렵다.

6) 18열 ROUND STICK INSERTER, 18열 AUTO 평 STICK INSERTER 비용(순번 ⑥)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18열 ROUND STICK INSERTER, 18열 AUTO 평 STICK INSERTER(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의 납품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205,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납품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년 4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가 완성되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납품받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사실(녹취록 38, 39쪽, 을 제30호증 참조)이 인정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견적서(갑 제3호증)는 계약 체결 과정의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원고와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사이에서 작성된 계약서(을 제20호증의 1)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전에 작성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손해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함}

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9. 4. 30.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 사진(을 제30호증의 3)상의 이 사건 장비는 스틱공급장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매거진이 누락되었고, 기계프레임 또한 스틸이 아니라 알루미늄으로 제작했다는 등의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와 같이 하자를 이유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이는바, 증인 E의 ‘사진을 보니,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장비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있고, 매거진, 전기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녹취록 38, 39쪽),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① 원고와 G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갑 제27호증의1)에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당사자들 사이에 발행된 ROUND STICK INSERTER(라운드 스틱 인서트)에 관한 첫번째 전자세금계산서(갑 제27호증의2, 1쪽)는 2018. 12. 20.에 작성되었다는 점(원고가 매수일이라고 주장하는 2019. 5. 5.은 계약일이 아니라 납품기일이다), ② 원고는 G로부터 매수한 ROUND STICK INSERTER를 D에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증인 E는 ‘피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장비의 설계도면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녹취록 38쪽),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설계도면이나 이 사건 제품의 사진을 받고 피고에게 하자를 지적하거나 수정 등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녹취록 52쪽 참조),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5. 16.자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9. 5. 31. 피고에게 처음으로 이 사건 장비를 공급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을 제52호증), 그 이전에 이 사건 장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장비를 수령하지 않은 동기 중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G와 ROUND STICK INSERTER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원고 측의 유책사유로 보여질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지체상금(순번 ⑧)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2019. 5. 20.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공사완료일인 2019. 4. 30.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28,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공사기간인 2019. 4.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할 의무가 있고, 위 공사를 지연할 시에는 총 공사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기계를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약정한 시한(2019. 3. 15.)보다 이르게 원고의 공장으로 옮겼다는 점, ② D는 원고의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시운전하고, 이 사건 기계가 원활히 가동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 사건 기계를 D의 양산공장으로 옮길 것을 요청하였다는 점(녹취록 18쪽), ③ 이 사건 기계는 2019. 4. 19. 위 양산공장으로 옮겨졌다는 점, ④ 원고의 직원이 작성한 위 출장복명서(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들도 이 사건 기계를 양산공장으로

옮기고, 설치하는 일에 참여하였다는 점, ⑤ 또한 위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2019. 5. 1.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진행된 작업 내역은 악세사리 설치, 전기배선 작업, 수정작업 등으로 그 이전에 이 사건 기계의 주요부분의 제작, 설치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를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상계 및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아래 표와 같은 채권 총 49,880,985원이 인정된다.

인정된 손해내역		
순번	항목	금액(원)
②	부품구입비용(충진기 3대, SUCTION, 파지컨베이어, 디프로스트 탱크 어셈블리)	30,179,052
③	안전난간 설치비용	2,300,000
④	배관업체 비용	7,500,000
⑤	도비비용	3,200,000
	출장비용	6,701,933
합계		49,880,985

2) 또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210,400,000원이 인정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이 법원 2019가합8402 공사대금 사건으로 원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3) 원, 피고의 위 각 채권의 이행기를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 마무리된 2019. 4. 30. 시점에는 모두 이행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원고가 자신의 위 각 채권으로 피고의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 또는 공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2020. 9.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각 채권 49,880,985원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9. 4. 30.로 소급하여 피고의 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210,400,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다.

5) 결국, 위와 같은 원고의 상계 또는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원고의 위 각 채권은 모두 소멸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률, 판사 이종찬, 판사 이은숙

별지 1

공사계약서

(주)A 대표이사 H(원고, 이하 "갑"이라 칭함)과 (주)B 대표이사 I(피고, 이하 "을"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공사명) : C ICE BAR 제조장치 제작 및 설치 시운전(별지 2 사양서 참조)

제2조(공사금액) : 일금사억팔천만(W480,000,000)원정(VAT 별도)으로 한다.

제3조(공사기간) : 2018년 12월 21일 ~ 2019년 04월 30일

제4조(대금지불)

- 1) "갑"은 "을"에게 계약금으로 공사금액의 35% 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을"은 계약금에 대한 보증조로 선금금 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예치한다.
- 2) "갑"은 "을"에게 공사 중도금으로 다음 기준에 의거 현금으로 지급한다.
 - "을"이 시운전 완료 후 "갑"의 지정장소에 2019년 3월 15일 입고 후 15%.
 - "갑"이 시운전 완료 후 2019년 3월 30일 D(주) 검수승인 후 설비 반출시 20%
- 3) 잔금 30%는 D(주) 공사완료 검사 합격 및 생산 개시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개요)

- 1)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자재 일체는 KS규격, 국내규격, 해외유명규격(CE, UL, STM, JIS 등) 인증을 받은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자재에 인증규격이 없을시 시중 최상품으로 "갑"의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모든 기자재는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을"은 계약기간 및 보증기간 중 "을"이 제공한 기자재의 설계상, 제조상 경고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으로 "갑"의 재산이나 "갑"이나 "을"의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재산, 생명, 신체에 대하여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체의 손해에 대해 "을"이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사정변경)

- 1) 공사 중이라도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사양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금액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쌍방 합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변경은 "을"이 부담한다.
- 2) 공사 작업 중 "을"측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사양변경에 대해서는 "갑"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공사한다.

제7조(부적합한 공사)

"갑"은 설계 도면과 일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을"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공사금액의 증액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하자관계)

- 1) "을"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간 발생하는 제반 하자는 즉시 무료 보수하여야 한다.
- 2) "을"은 공사완료 검사 합격 후 하자보증조로 총 공사금액에 10%를 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갑"에게 제출한다.
- 3) 하자 발생시 "을"이 즉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전기 2)항의 하자 예치금을 "갑"의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하도급 관계)

- 1) "을"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여서는 안된다.
- 2) "을"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때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연체료)

- 1) "을"이 계약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치 못하였을 경우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대금 지불시 공제 후 지급한다.
- 2) 단, 천재지변 및 "갑"이 인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연체료를 공제할 수 없다.

제11조(제조물 책임)

"을"의 공사, 제작 과실로 인해 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손해배상이 "갑"에게 발생 시 손해배상금 뿐만 아니라 "갑"의 확대 손해(안전사고, 기업 이미지 손상으로 인한 매출 감소)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2조(위약)

- 1) "갑"은 다음의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을"은 이견 제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가. 납품 물품이 도면 사양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 나.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 다. "을"에게 부정행위가 있을 때.
 - 라. 기타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할 때.
- 2) 계약이 해약되어 "갑"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을"은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다.
- 3) "을"이 본 계약의 해약을 원할 때는 해약으로 인한 "갑"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별지 2

C 아이스바 제조장치 일반 및 제작 사양1. 준A 사급 LIST

- 1) C SCREW MOULD
- 2) MOULD CHAIN, EXTRACTOR BAR CHAIN
- 3) SUCTION PUMP, 소독수 PUMP
- 4) EXTRACTOR BAR

2. 준B 제작 SCOPE

1) 구동 PART 3곳(MOULD 구동, EXTRACTOR 구동, UP-DOWN 구동)은 SERVO 제어 (SERVO MOTOR & DRIVE는 J 제품 사용)

2) BRINE PART

- FRAME, COVER, 세정 1~3차(위생펌프, 레벨센서, 온도게이지), 배관 및 FILTER 설치.
워크 웨이(엠보싱 타공판 사용), BRINE INLET, OUTLET.

- FRAME은 SUS304 CHANNEL 사용, 우레탄 보온 후 COVER.

- 세정 LINE은 사각형 TYPE.

- DEFROST TANK 사각 TYPE(위생펌프, 레벨센서, 온도게이지, 스팀배관 및 FILTER 설치)

- LOSS CONVEYOR는 SUS MESH TYPE에 MOTOR는 상부에 위치, COVER 및 이동식 이물받이통 제작

- BRINE TANK SUS 316L 3.0T 사용, COVER SUS304 2.0T 사용.

- BRINE 상부는 서랍 TYPE, PC COVER 제작 설치.

- BRINE 하부는 이물받이 및 DRAIN 설치.

3) AIR 부품(CYLINDER, SOLENOID VALVE, REGURATOR 등)은 K 제품.

4) 전기

- 전기배선 DUCT는 SUS 사용.

- PLC는 J 제품 사용.

- MAIN PANNEL 1EA, 중간 PANNEL 1EA, 조작 TOUCH PANNEL 2EA등은 SUS 방수용으로 제작

5) EXTRACTOR FRAME은 V-CUTTING후 절곡하여 사용, 측면 COVER.

6) 구동부는 1PITCH, 2PITCH 모두 가능하게 설계.

7) 충전기 3대 제작

- 2층 HOPPER, HOPPER COVER, HOPPER에 LEVEL, GUAGE 및 자동 LEVEL SENSOR 부

작 설치.

8) SUCTION(1대) 제작은 UP-DOWN TYPE으로 제작.

9) 2D (AUTO CAD)도면은 기존 "갑"의 도면을 참고하여 제작도, 부품도, 조립도, LAYOUT, 부품 LIST를 작성하여 "갑"에게 FILE로 제출.

10) 3D 도면, 배관도, 회로도도 작성하여 "갑"에게 FILE로 제출.

11) MANUAL(3D 작성), 전기 MANUAL 작성하여 "갑"에게 FILE 및 책자로 제출.

12) 모든 부품은 버핑(광택) 처리

13) 18열 ROUND STICK INSERTER 제작

- 기존 설비보다 UP-GRADE하여 제작.
- AIR 부품은 K 제품 사용.
- SERVO MOTOR & DRIVE는 J 제품 사용.
- 별도 PANNEL 설치.
- 버핑(광택) 및 아노다이징 철저.
- 2D, 3D 도면 및 MANUAL 제출.
- 설치, 시운전시 타 업체일 경우에도 지원.

14) 18열 AUTO 평 STICK INSERTER 제작.

- ROUND STICK INSERTER와 동일 조건.
- 단, 납기는 본 계약의 공사기간에 저촉되지 않으며 "갑"과 "을"이 추후 협의하여 정하며 설치, 시운전 등 일체의 행위는 "을"이 책임 진다.

.끝.

1) 견적서상의 공사대금은 530,300,000원(부가세 별도)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480,000,000원(부가세 별도)이다.

2) 원고는 처음에는 이 사건 악세사리에 관한 비용으로 79,762,500원(2020. 9.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을 주장하였다가, 2021. 11. 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와 준비서면으로 위와 같은 주장으로 변경하였다.

3) WALK WAY는 작업자들이 걸어다니는 공간으로 발판과 작업자들의 추락 등을 방지하는 안전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